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7

발의연월일: 2024. 6. 26.

발 의 자:서영교・박희승・이훈기

민병덕 • 백승아 • 이해식

윤준병 • 강유정 • 위성곤

정준호ㆍ허 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, 특히 주거와 관련하여 최근의 주거비(주택가격, 전세가격 등) 부담의 지속 적인 증가는 결혼·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.

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의 주택구입자금등(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)을 연 1%의 초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, 신 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의 상환 을 면제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 결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의2(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등) ① 국가는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신혼부부(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일 또는 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(이하 "주택구입자금등"이라 한다)을 융자할 수있다. 이 경우 신혼부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 - 1. 주택 취득일 또는 임차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(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그 자녀 모두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.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자녀가주택 취득일 또는 임차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 - 2. 주택 취득일 또는 임차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

-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1억원으로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1로 하고 상환기한은 융자받은 날부터 10년 이내로 한다.
- ④ 국가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.
- 1. 자녀가 1명인 경우: 이자의 전부
- 2. 자녀가 2명인 경우: 원금의 100분의 50
- 3.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: 원금의 전부
- 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등 지원사업과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,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등에 의한다.
- 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등을 융자받은 사람에게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 야 하며,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교부받거나 융자금 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
- 2.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 또는 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⑦ 주택구입자금등 융자의 신청절차, 방법,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

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대상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부터 5년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6조의2(신혼부부 주택구입자
	금등의 융자 등) ① 국가는 결
	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신
	혼부부(「가족관계의 등록 등
	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
	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
	신고일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
	택 취득일 또는 임차일부터 6
	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
	람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
	같다)가 주택을 구입 또는 임
	차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
	(이하 "주택구입자금등"이라 한
	다)을 융자할 수 있다. 이 경우
	신혼부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
	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	1. 주택 취득일 또는 임차일 현
	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
	자(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
	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	및 그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
	하지 아니할 것. 이 경우 본
	인과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주

- 택 취득일 또는 임차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- 2. 주택 취득일 또는 임차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
-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1억 원으로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1로 하고 상환기한은 융자받은 날부터 10년 이내로 한다.
- ④ 국가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.
- 1. 자녀가 1명인 경우: 이자의 전부
- 2. 자녀가 2명인 경우: 원금의100분의 50
- 3.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: 원 금의 전부

- 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등 지원사업과 융자에 필요한 재 원은 일반회계, 「주택도시기금 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등 에 의한다.
- 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등을 융자받은 사람에게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융자금의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융자금을 교부받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
- 2.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
 주택 취득일 또는 임차일부터
 6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
- ⑦ 주택구입자금등 융자의 신 청절차, 방법, 자녀 수의 인정

<u>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</u>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